##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8

발의연월일: 2021. 6. 9.

발 의 자 : 권은희·강은미·이태규

최연숙 • 박덕흠 • 배진교

양정숙 • 이은주 • 류호정

윤재갑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군인이범한 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등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

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의안번호 제107 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분적 재판권)"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은"을 "군사법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을 "국방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편의 제목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계엄의 특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	제2조(군사법원의 재판권) ① 군
<u>원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법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b>.</b>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	②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
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	른 재판권을 가진다.
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u> 가진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	<u>&lt;삭 제&gt;</u>
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	
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	
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	
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②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	③ <u>국방부장관은</u>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u>시에는</u>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	
법원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	
등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u>.</u>

- 1. · 2. (생략)
- ④ (생 략)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 1. · 2.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제5편 계엄의 특례